

보조금 지원 건물의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임대차, 전대차 상황 - 보조금 환수 및 관

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: 제주지방법원 2019. 11. 19. 선고 2018가단56574 판결



## 1. 사안의 개요

- 제주도의 수협에서 수산물 직매장 건설하는데 제주시의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음
- 준공 후 운영하던 중 저조한 활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시의 승인을 받아 일부 공간을 임대차
- 제주시의 관리자 변경(임대) 승인 조건 "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 판매용도로만 사용할 것"
- 그러나 제주시의 승인 없이 전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하던 중 적발 - 제주시의 보조금 1억원 반환 명령

5) 제주시는 2015. 12. 7. 원고에게 '이 사건 직매장에 대한 관리자변경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고, 변경 승인된 관리자(F)가 아닌 제3자(G)에게 전대하는 등 보조사업 수산시설물 처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, 이 사건 직매장에 관한 관리자 변경(임대)승인을 취소하고 보조금 1억 원을 반환 조치할 것'임을 통보하였다.

## 2. 수협의 조합장 및 담당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, 피고 C은 원고의 이사로서 이 사건 직매장을 보조사업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관리자 변경(임대)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법령 등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직매장을 전대하고 이 사건 직매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고, 피고 B은 제주시로부터 별도의 관리자변경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이 사건 직매장을 전대한 행위를 승인하고 이 사건 직매장에서 승인조건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 1억 원을 제주시에 반환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.

행정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